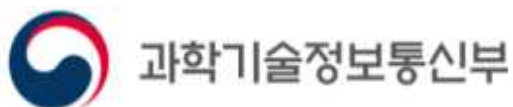

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 (민간분야 확산, 신뢰인프라) 공모안내서

2025. 11. 10.



I.

사업 개요

1. 사업 목적

- (민간분야 확산) '국민이 편리'해지고, '기업이 성장'할 수 있도록 해외 연계 실증 등이 가능한 산업혁신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·추진
- (신뢰인프라) 공공분야에서 활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 3종 (데이터 이력추적, 서비스형 블록체인(BaaS), 디지털지갑) 신규 구축·실증
※ 인공지능 활용 방안 필수 제시(예: 블록체인 데이터 기반 AI 의사결정 지원 도구 등)

2. 사업 내용

- (사업명)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(민간분야 확산, 신뢰인프라)
- (사업기간) 협약일 ~ 2026. 12. 18.
*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6년 2월 19일(10개월)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, 향후 **협약체결일 확정·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**
- (지원규모) 총 33억원(5개 과제)

구분	과제당 지원금	과제 수	소계
민간분야 확산	6억원	4개	24억원
신뢰인프라	9억원	1개	9억원

※ 최종 확정된 '26년 예산 규모에 따라 과제 수가 조정될 수 있음

- (공모주제) 민간분야 확산(자유주제), 신뢰인프라(인프라구축)

<지원제외>

- ①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정의상의 '가상자산' 관련 분야 제외
- ② '지역특화 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'(부산, '24~'25), '블록체인 기반 대구 시민 생활편의 증진 공공서비스'(대구, '25)으로 구축한 아이템으로 중복 지원 불가

- (민간분야 확산)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
- (신뢰인프라) 공동인프라(데이터 이력추적 1종, 서비스형 블록체인(BaaS)* 1종, 디지털지갑 서비스** 1종) 신규 구축

* 지원 시 블록체인 플랫폼 템플릿 제시, 사업선정 후 KISA 협의

** '24~'25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민간분야(상호운용) 사업과 상호운용 지원 필요

○ (지원방식) 상호출자(매칭펀드) 방식

- ※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(단,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·참여기업에게 사업 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)
- ※ 비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불필요

< 매칭 금액 예시 (정부지원금 기준 최소 금액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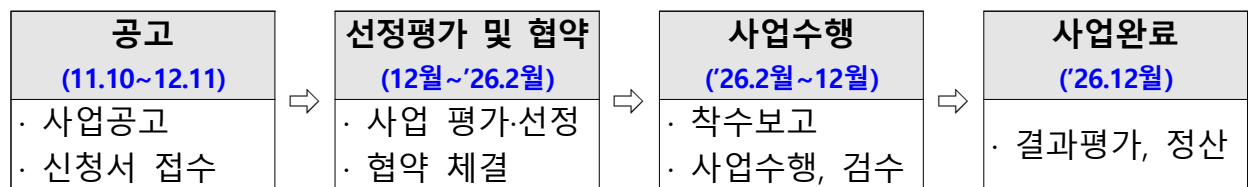
구분	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, 공기업 등
6억	총사업비(정부지원금+민간부담금)	800,000,000원	1,200,000,000원
	민간부담금	200,000,000원	600,000,000원
	민간부담금 中 현금*	20,000,000원	90,000,000원
9억	총사업비(정부지원금+민간부담금)	1,200,000,000원	1,800,000,000원
	민간부담금	300,000,000원	900,000,000원
	민간부담금 中 현금*	30,000,000원	135,000,000원

- ※ [별첨] 2026년 블록체인 실증사업 매칭펀드 관련 자기부담금 계산파일 참고
- * (민간부담금 중 현금) 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,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3% 이상을 부담해야 함

○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자격 및 조건 등 확인 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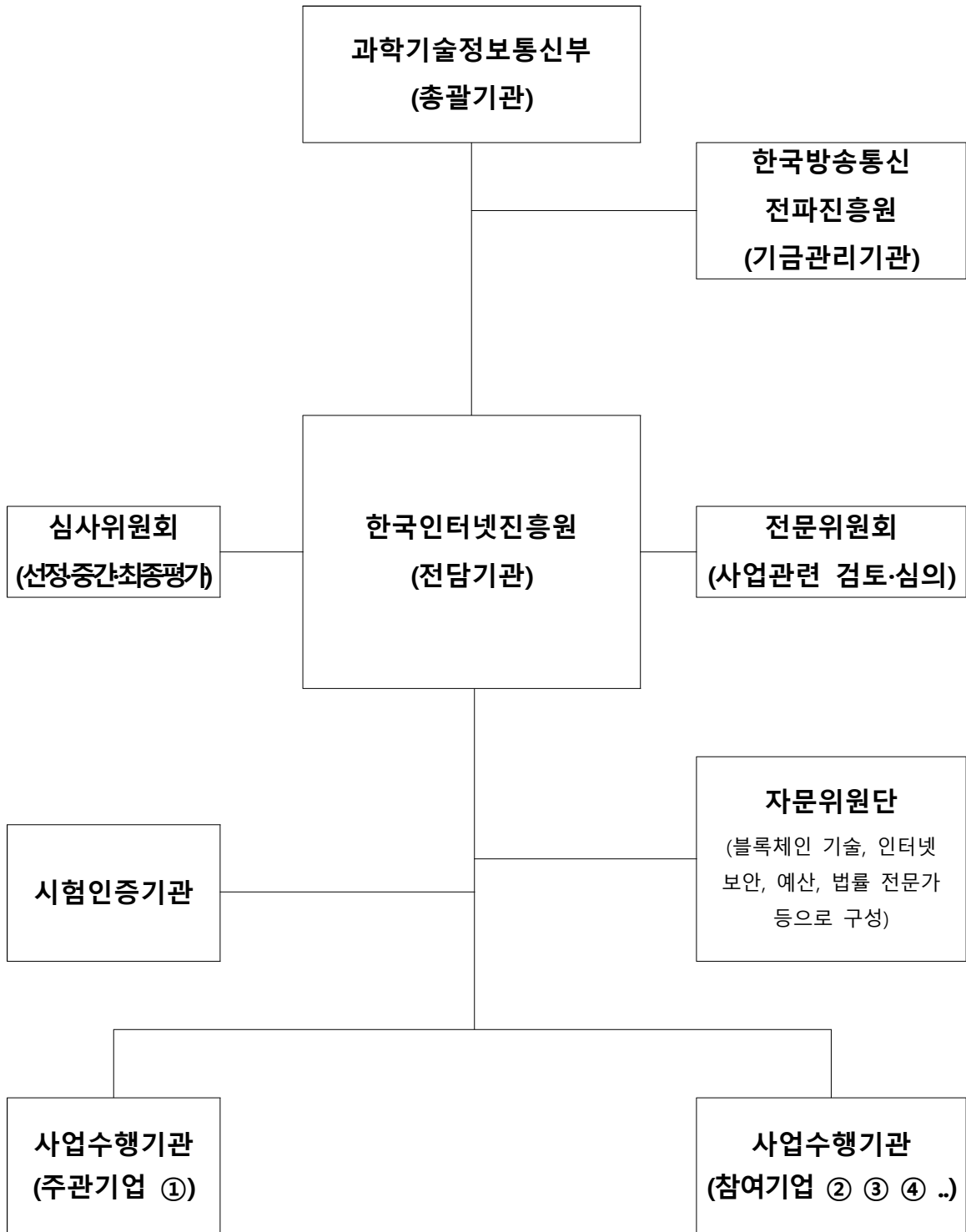
- ※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수행기관 책임으로 함
- 사업기간, 상호출자비용, 사업구성, 공동수급, 참여율, 블록체인기술 활용여부, 예산편성방법, 사업중복여부, 참여배제대상 등
- 제안사업은 블록체인(퍼블릭, 프라이빗, 분산앱, 스마트컨트랙트, DID, NFT 등) 기술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
- ※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이 제시하는 블록체인 기술 가이드라인 규격을 따라야 함

3. 추진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사업 추진체계



○ 기관·기업별 역할

구 분	주 요 업 무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총괄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○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(기금관리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금관리, 배정 및 정산
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(전담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○ 지원사업(확산사업) 공모 및 협약 ○ 사업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평가 ○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○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
심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 제안서 평가 ○ 사업 평가, 세부내용 검토, 우선순위 부여 등 평가
전문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약체결 전, 중도해지,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 과제의 제재·환수에 관한 사항, 정산금·환수금·기술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·심의
자문위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된 사업에 대해 기술·법률·사업화 자문 추진 ○ 필요시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
시험인증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·기능성에 대한 검증 (KOLAS 성능시험이 가능한 기관)
사업수행기관 (주관·참여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○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○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(필요시) ○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
주관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음
참여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블록체인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,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(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)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·참여기업으로 참여

II.

제안 안내

1. 접수 안내

- 접수기한 : 2025년 12월 11일, 14:00 (※ 제출기한 이후 사유불문 접수불가)
- 접수방법 : KISA 전자계약시스템(<https://cont.kisa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번호	제출서류	제출여부		비고	제출 시점
		주관	참여		
1	신청서 제출 공문 1부	필수	-	자체양식	공모 지원시 제출
2	신청서 1부	필수	-	[서식-1] 참조	
3	사업계획 요약서 1부	필수	-	[서식-2] 참조	
4	사업계획서 1부	필수	-	[서식-3] 참조	
5	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	필수	-	자체양식	
6	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	선택	-	[서식-4] 해당시 제출	
7	합의각서 1부	선택	-	[서식-5] 참조	
8	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-6] 참조	
9	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-7] 참조	
10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-8] 참조	
11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-9] 참조	
12	사용인감계 1부	필수	필수	[서식-10] 참조	
13	국내외 수요기관 참여의향서 1부	선택	선택	[서식-11] 참조	
14	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	필수	필수	[서식-12] 참조	
15	사업설명 자료(국민참여단 제출용)	필수	-	[서식-13] 참조	
16	법인인감증명 1부	필수	필수	-	
17	법인등기부등본 1부	필수	필수	1개월 이내 발급	
18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필수	필수	-	
19	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	선택	선택	해당 시 제출	
20	최근년도 재무제표	필수	필수	-	
21	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	필수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	
22	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필수	필수		
23	현금출자(납입)확약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14] 참조	최종 협약시 제출
24	참여인력 참여확인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15] 참조	
25	보안서약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16] 참조	
26	청렴이행각서(참여인력) 1부	필수	필수	[서식17] 참조	
27	한국인터넷진흥원 토지자 영업현황 확인서	필수	필수	[서식18] 참조	

※ 협약체결 시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제10조에 의거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○ 문의처

- [민간분야 확산] 블록체인확산팀(bchain2026@kisa.or.kr)
박소현 선임연구원(061-820-3932), 황원비 주임연구원(061-820-3939)
- [신뢰인프라]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정책팀 박진상 선임연구원
(jinsang@kisa.or.kr, 061-820-3919)

2. 공동수급(컨소시엄) 관련

- 공동수급(컨소시엄) 구성 시 주관·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및 접수(필수)
 - ※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
 - ※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(<http://cont.kisa.or.kr>)에 **참여기업이 직접 제출**
 - ※ 데이터 이력추적 1종, 서비스형 블록체인(BaaS) 1종, 디지털지갑 1종을 개발 필요, **데이터 이력추적(기업 1곳), 서비스형 블록체인(기업 1곳), 디지털지갑(기업 1곳)으로 구성**해야 함(단, 계열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불인정함)

< 공동수급 접수 유의 사항 >

○ 2개 사업을 지원할 경우 접수 방법 예시

- ※ 시스템으로는 1개 기업이 1개 사업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, 아래 방법으로 제출 필요
 - 사업1 :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직접 제출(시스템으로 기업 호출 후 제출)
 - 사업2 : 주관기업을 통해 서류 제출(시스템으로 기업 호출 X, 주관기업에 제출서류 전달 →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 제출서류 업로드 시 참여기업의 서류와 병합하여 업로드)
- ※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공동수급 구성 관련 서류에,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명시되어야 함
- ※ '2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' 외 사유 불문 전자계약시스템에 서류를 직접 업로드해야 함

- 공동수급(컨소시엄)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,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
- 공동수급(컨소시엄)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,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)는 별도 첨부
- 공동수급(컨소시엄)시 참여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,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
- 모든 기업은 **최소 참여 비율을 10% 이상**으로 구성해야 함
 - ※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(예) 12.3(o), 11.32(x) / 10% 미만 지원 불가

- 협약 후 사업수행기관의 공동수급(권소사업)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,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'전문위원회'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
- 사업관리자(PM)는 공동수급(권소사업) 주관기업 소속 임·직원으로서 공고일 전부터 재직하여야 함
- 공동수급 구성시 개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나, 개인사업자 대표는 인건비 산정이 불가함
 - ※ 사업 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인건비 산정 가능

3. 유의사항

□ 접수 유의사항

-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접수는 온라인(전자계약시스템)으로만 가능함
-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은 별첨 '공모서식' 등을 이용하여 작성
 -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
 - 별첨,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
-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
 - ※ '~를 제공할 수도 있다', '~이 가능하다', '~을 고려하고 있다'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
-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,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
-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'작성요령'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
- 신청서의 금액 중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(관세, 부가세 등)을 제외한 한화(원)로 기재
- 발표평가 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관리자(PM)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, 발표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수행기관 인력은 공동수급(전소사업)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
-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에서 부담
-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
-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

상실되고, 전담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에서 부담함

- 전담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,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 - ※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
-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
-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[서식-3]에 작성한 내용,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
□ 보안준수

-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관계자 외 인원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,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짐
-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,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·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를 방지·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,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징구

< 보안준수 위반 사례 >

- 참여기업이 전담기관·주관기업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
- 사업 참여인력이 전담기관·주관기업에 사전 승인 없이 컨퍼런스에 사업 내용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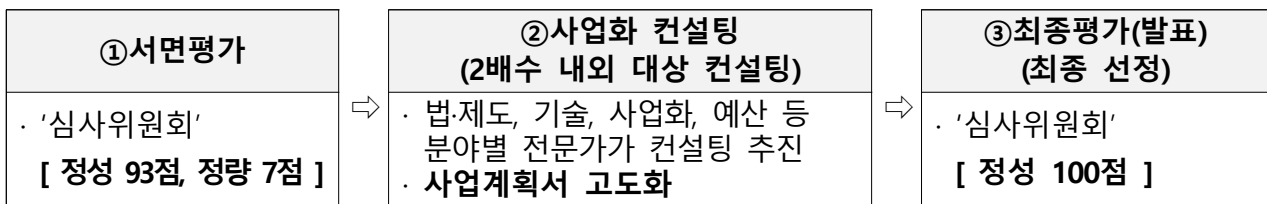
Ⅲ.

사업 선정방안

1. 평가 공통사항 (서면·발표평가 공통사항)

-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,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
 -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
-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
-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표의 '평가 구분' 순서(①→②→③→④)로 점수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인정
- 협상대상자의 신청제안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
 - ※ 최종 지원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며,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(협상 대상자가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업체를 선정)

2-1. '민간분야 확산' 선정 평가



구분	주요내용	비고
(1단계:서면평가)	○ 제안사업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 여부 ○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 등	심사위원회
(2단계:컨설팅) 자문단 컨설팅	○ 1차평가를 통과한 사업(2배수 내외)에 대해 법·기술·사업화·예산 컨설팅 후 사업계획서 수정 ※ 사업자는 컨설팅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(미반영 시 사유제출)	전담기관(KISA), 자문단, 사업자
(3단계:최종평가) 발표평가	○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로 최종 발표평가 ○ 사업 적절성, 실현 가능성, 효과성, 파급력, 서비스 사회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, 1차평가 및 컨설팅 후 개선노력 등	심사위원회

○ (1단계) 서면평가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(2배수 내외 선정)
 - ※ 서면평가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최종평가시 별도제출
- (평가위원) 블록체인 등 외부전문가(100%)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정량 점수* 등

< *정량 점수 기준 >

- (+최대 3점)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점수
 - ※ (국민참여단) 지원한 사업 중 선호하는 사업에 투표 → (KISA) 득표수 순으로 '상위 20% 미만'(3점), '20% 이상 50% 미만'(2점), '50% 이상'(1점) 총 3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으로 점수 부여
 - ※ 국민참여단 투표시 지원 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[공모서식-13]를 참고하여 투표
- (+1점)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지원 시 점수 부여 (참여 기업 수와 상관없이 1점)
- (+1점)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 시 점수 부여 (중소기업 참여 개수와 상관없이 1점)
- (+2점) (신규)해외 기관·기업 연계 실증 시 점수 부여
 - ※ 증빙자료[공모서식-11] 제출 필수, 발표자료에 해당 내용 추가 필수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①사업의 적절성 (3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○ 사업목표의 타당성 (예:AS-IS, TO-BE 명확성 등) ○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 	30점
②실현가능성 (30점)	사업 수행의지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제안기업의 수행 능력 및 의지 (예 : 서비스 실수요자 확보 노력 등) ○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(필요한 기관·기업으로 구성여부, 역할분담 등) ○ 블록체인 서비스 구성의 적합성 (블록체인 참여기업 데이터 등) 	30점
③사업의 효과성 (23점)	성과지표 타당성 및 목표의 구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 성과지표의 타당성 (예 : 서비스 목표에 맞는 지표인지 등) ○ 단기, 중기, 장기 목표의 구체성 	23점
④파급력 (10점)	대국민 이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국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여부 	10점
정량 점수 (7점)	국민 선호도(3점)	○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점수	7점
	컨소시엄(1점)	○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지원	
	중소기업(1점)	○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	
	해외 기관·기업 연계 실증(2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블록체인 서비스를 해외 기관·기업과 연계해 실증하는 경우(증빙자료[공모서식-11] 제출 필수) ※ 신청서·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 미기재시 제외 	
총계			100점

○ (2단계) 사업화 컨설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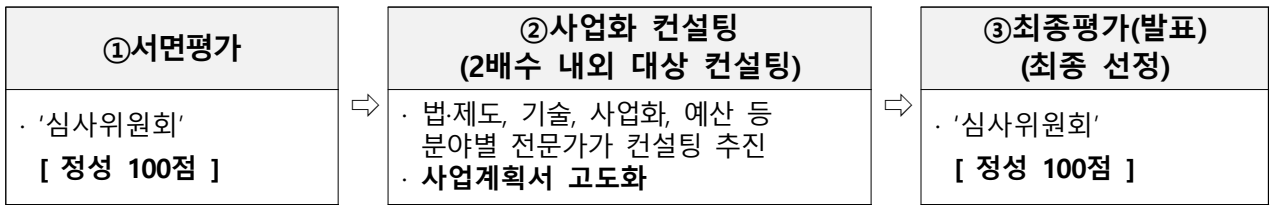
- (대상)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
 - (내용) 컨설팅(법·기술·사업화·예산) 후 사업계획서에 반영
 - (방식)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컨설팅 진행
- ※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·발표자료는 KISA에 제출(제출된 파일로 최종평가 진행)

○ (3단계) 최종평가 (발표)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(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·발표자료로 평가)
- (평가위원) 블록체인 등 외부전문가(100%)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파급력 등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①사업의 적절성 (1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○ 사업 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○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	10점
	구현가능성	○ 사업 기간내 개발, 실증기간의 적절성	15점
②실현 가능성 (30점)	개선노력	○ 사업화 컨설팅 후 개선사항 반영 노력	15점
	성과지표 타당성	○ 서비스 성과지표의 타당성 (예 : 서비스 목표에 맞는 지표인지, 도적인 지표인지 등)	10점
③사업의 효과성 (30점)	블록체인 활용 효과	○ 블록체인 기술 적용 효과 - 편의성, 업무절차 간소화, 비용절감 등 효과 ○ 대국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여부	20점
	서비스의 사회적가치	○ 서비스의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(예 : 상생협력, 친환경, 지역연계 등)	10점
④사업의 파급력 (30점)	미래 성장 가능성	○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사업연계 및 확장성(향후 확대 가능성)	20점
	총계		100

2-2. '신뢰인프라' 선정 평가



구분	주요내용	비고
(1단계:서면평가)	○ 제안사업자가 상호운용 과제 수행 가능 여부 ○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	심사위원회
(2단계:컨설팅) 자문단 컨설팅	○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(2배수 내외)에 대해 법·기술·사업화·예산 컨설팅 후 사업계획서 수정 ※ 사업자는 컨설팅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(미반영 시 사유제출)	전담기관(KISA), 자문단, 사업자
(3단계:최종평가) 발표평가	○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로 최종 발표평가 ○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	심사위원회

○ (1단계) 서면평가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(2배수 내외 선정)

※ 서면평가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최종평가시 별도제출

- (평가위원) 블록체인 외부전문가(100%)
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사업의 적절성 (3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○ 사업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○ 사업목표의 타당성 ○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	30점
실현 가능성 (30점)	사업 수행의지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	○ 참여기관 구성의 적절성 및 과제수행 가능여부 (필요한 기관·기업으로 구성여부, 역할분담 등) ○ 공동인프라(디지털 이력추적, 서비스형 블록체인 (BaaS), 디지털 지갑) 개발 계획의 적절성	30점
지속 가능성 (30점)	지속운영 타당성 및 목표의 구체성	○ 공동인프라 구축 및 향후 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운영방안의 타당성 ○ '27년 신규 공동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방안 ○ 서비스 수요기관 확보를 위한 계획의 타당성	30점
신뢰성 (10점)	서비스 안정성 확보방안의 타당성	○ 보안인증(CSAP, ISMS-P, SW시험인증체계) 신청 및 추진·대응 계획의 타당성	10점
총계			100점

○ (2단계) 사업화 컨설팅

- (컨설팅대상)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
- (컨설팅내용) 컨설팅(법제도·기술·사업화·예산) 후 사업계획서에 반영
- (컨설팅방식) 블록체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컨설팅 진행
- ※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·발표자료는 KISA에 제출(제출된 파일로 최종평가 진행)

○ (3단계) 최종평가 (발표)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(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·발표자료로 평가)
- (평가위원) 블록체인 외부전문가(100%)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①사업의 적절성 (1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○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 	10점
②실현 가능성 (30점)	사업 수행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제안기업의 수행 역량 및 의지 ○ 사업 기간 내 개발, 실증기간의 적절성 	10점
	구현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기간 내 공동인프라(디지털 이력추적, 서비스형 블록체인(BaaS), 디지털 지갑) 개발의 적절성 ○ '26년 공동인프라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	10점
	컨설팅 후 개선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화 컨설팅 후 개선사항 반영 노력 	10점
③지속 가능성 (30점)	성과지표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 성과지표의 타당성 (예 : 서비스 목표에 맞는 지표인지, 도적인 지표인지 등) 	10점
	지속운영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인프라 신규 등장에 따른 서비스 연계방안의 타당성 ○ 공동인프라 구축 후 지속 운영방안 타당성 ○ '27년 공공서비스 연계·개발 시 지원방안 ○ '27년 신규 구축될 공동인프라 연계방안 ○ '24~'25년 민간분야(상호운용) 사업과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	20점
④플랫폼 신뢰성 (30점)	서비스 안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안인증(CSAP, ISMS-P, SW시험인증체계) 신청 및 추진·대응 계획의 타당성 	10점
	확장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 개발·운영 등 이용 및 확장 편의성 	20점
총계			100점

1. 협약 안내

-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
-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,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
- 기술협상 후 완료된 문서(사업계획서, 협약서 등)에 대해 오프라인 서명이 아닌 'KISA 전자계약시스템'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-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70%를 지급하며, 사업수행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(100%)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,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
-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'전문위원회'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
- 협약체결 이후 제안사업이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

2. 사업 추진

□ 사업관리 및 보고

-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·월간보고로 진행
-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방문 실사 요구시에 응해야 하며(2회 이상) 착수보고, 중간·최종발표, 수시보고 실시
-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사업품질관리조직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해야 함
- 국민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·행사 발굴 및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함
 - 서비스 성과공유 및 홍보 등을 위해 전담기관(KISA)이 주관하는 행사(블록체인 진흥주간, 해외전시 참여 등)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사업 종료 후 실적 현황 요구 시 성실히 참여해야 함
- 사업추진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'전문위원회'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

□ 사업비 편성 및 집행

- “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”의 별표1,2,3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(간접비는 편성 불가)
 - 자체개발 솔루션 및 자체개발 제품의 경우 현물 편성 불가
 - 편성된 사업비로 사업수행기관 간 제품/시스템/서비스 등 거래 불가
 - 사업비 사용원칙, 영수증 처리, 증빙서류, 인증범위 등은 위 지침 준수 필요
-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며, 구입이 필요할 경우 협약시 제출한 구매요청서에 한하여 전담기관 승인 후 구매 가능
- 사무실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책정 불가, 기자재 임차 비용 등은 기자재 구매 사유서에 임차 사유 등(본 사업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증명해야 함)을 명시하여 사전 제출해야 함

- 사업비 집행은 KCA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, 각 사업 회계담당자는 회계·정산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함
- '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'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이며,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

□ 필수 공통비용 (예산서 반영 필수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금액	비고
일반수용비	①홍보비	-	사업수행기관이 홍보를 직접 수행 (홍보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홍보를 진행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편성 필요)
	회계감사 (주관기업 필수책정)	2	KISA가 감사 용역사 선정
②일반연구비	SW시험인증용역	20	사업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
	회계컨설팅 (주관기업 필수책정)	5	KISA가 컨설팅 용역사 선정
	개인정보 컨설팅	-	사업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
	사업 품질관리조직 운영	40	KISA가 수행 용역사 선정
	앱·웹 보안취약점 점검	-	사업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
③일반용역비	블록체인 누리단 (국민참여단)	9	KISA가 수행 용역사 선정
	진흥주간 전시 (주관기업 필수책정)	15	KISA가 행사 용역사 선정
	홍보 영상 제작	-	사업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
총계		91	-

※ 항목별 필수 공통비용은 최종 협약 시 변경 될 수 있음

- (①홍보비) 수행기업은 본 사업으로 개발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온·오프라인 홍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(예산편성 필수)
 - (일반수용비)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홍보를 수행할 경우
 - (일반용역비) 홍보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홍보를 진행할 경우

- (②일반연구비) 지식기반 업무 용역비(예, 법률 및 특허, 소프트웨어 개발 등)로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(단, 동일용역은 한 사업자 예산에 편성)
 - ‘개인정보 컨설팅’, ‘앱·웹 보안취약점 점검’은 필수 추진 항목이며, 컨소시엄에서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
- (③일반용역비)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대행 용역비(홍보 대행 등)로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(단, 동일용역은 한 사업자 예산에 편성)

□ 사업 계획의 변경

-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 사업담당부서에 서면(공문)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
 -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, 2024. 10. 24.)에 따름
- 승인·통보사항은 회계사 검토 후 전담기관에 전자공문 발송
- 사업계획 변경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

< 승인 사항 >

1.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
 2. 최종 목표의 변경
 3.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
 4. 기금사업비의 운영비, 연구용역비의 20% 이상 증액
 5.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
 6.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
 7. 비목 중 인건비, 여비의 세목간 변경
 8. 취득가액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 금액)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
-

3. 사업 평가

□ 중간평가

- 선정평가 때 참여한 '심사위원회'가 중간평가 실시
- 기술 개발·적용과 관련하여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,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 - ※ 자문·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시 자료로 활용
- 중간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(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)

구분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목표의 달성	○ 계획된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이 적절하고 사업목적 및 목표에 맞게 추진 되었는가	25점
과정의 적정성	○ 상반기 추진된 사업·홍보 부문 산출물이 충실하고 계획 대비 적정한가	30점
	○ 상반기 추진된 개발 부문 산출물이 충실하고 계획 대비 적정한가	20점
지적사항 이행정도	○ 평가의견, 품질관리 등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을 적절히 하였는가 ○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저해요인 등을 적절히 조치하였는가	25점
총계		100점

※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결과평가

- '심사위원회'가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산출물(최종 결과보고서 등) 등을 활용해 최종평가 실시

※ 세부 평가방법/절차,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함

- 평가 결과 70점미만 사업자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

구분	평가항목 및 기준	점수
목표의 달성	○ 목표 달성의 효율성 및 충실성	20점
과정의 적정성	○ 사업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일정준수 등 수행사업 내용의 적정성 ○ 사업추진방식 개선, 비용절감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	20점
결과의 질적수준	○ 사업추진 산출물 등의 완성도 및 활용성	20점
성과의 활용도	○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○ 정보통신산업 및 국가경제·사회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	20점
지적사항 이행정도	○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 저해요인조치에 대한 적절성 ○ 사업진도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	20점
총계		100점

※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4.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

□ 회계 정산 절차

-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,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·방법 등 협의
 -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전담기관에 승인·통보시 사전에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함
 -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일시에 회계감사 비용 등을 회계법인 등에 일괄 지급해야 하며,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에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('필수공통비용'(17P) 참고)
- 사업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일체*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
 - *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, 근거서류(영수증, 계좌 거래내역 등),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서류
-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·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사업수행기관에게 송부
-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전담기관에 제출
 - ※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제출(USB 등)
- 사업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전담기관에 송금
 - ※ 정산내역 엑셀 파일을 e-mail로 별도 전송(최종 반납금 반납 계좌는 추후 공지)
-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-mail로 전송
 - 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-11호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」에 의거,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, 집행잔액, 불인정금액 및 이자발생액은 '27.2월 중순까지 반납
- 전담기관이 정산결과를 검토하여(필요시 실사),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재정산 요청

○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

- 총 사업비(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) 집행 잔액,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, 이자발생액 반납

□ 소프트웨어 부문

○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시험인증기관*에 블록체인 성능 관련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서 획득 및 제출

* 시험인증기관 : KOLAS(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) 인정 획득 기관

- 사업수행기관은 기능 요구사항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기업과 상호 협의 가능
-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시험인증기업과 시험 항목 협의 및 계약 완료
- 사업수행기관은 시험인증기업이 시험 수행 시 필요한 시험환경 (H/W, S/W), 시험도구 및 시험지원 인력 제공

○ 사업의 결과물인 서비스 및 제품의 기능성·신뢰성 검증을 위한 결과보고서 제출(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)

- 모바일 앱·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
- 개인정보보호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(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)

※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, 해당 근거(법률검토 의견서 등) 제출 필수

-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결과보고서

○ 블록체인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(블록체인 탐색기, 대시보드 등)을 제안하고 개발 및 공개해야 함

※ 전담기관에 블록체인 관리 및 모니터링 접근권한을 제공해야 함
(개발 중·개발 완료된 서비스의 관리자 권한을 전담기관에 부여)

5. 기타 안내 사항

- 사업별 국내·외 시장현황, 국내·외 법/제도·정책현황, 국내·외 표준·기술개발 현황을 전담기관에서 요청 시 제출
 -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, 전담기관이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
 - ※ 사업종료 이후, 본 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요청 예정
- PM은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지며, 정기·비정기 회의, 각종 발표에서 직접 발표할 것
-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함
 - 서비스·제품홍보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임을 밝혀야 함
 - 공동수급(컨소시엄) 내에서 수익금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 후 본 사업에 지원해야 함
 - 단, 전담기관(KISA) 또는 총괄기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이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
 - 전담기관(KISA), 총괄기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이 필요시 제3의 기관에 사업권한 및 운영을 위임·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
- 본 사업의 개발기간(시범운영 포함) 동안 개발·구매한 유·무형자산(하드웨어, 상용 소프트웨어 등)은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함
 - 사업수행기관은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79호, 2024. 10. 24.)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함
 - 본 사업을 통해 구입한 유·무형 자산은 협약종료 후 5년(2031. 12.)까지 전담기관에게 연2회 현황보고, 자료를 제출해야 함

- 사업수행시 서비스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수행 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
- 사업수행시 사업의 적정성·타당성, 법적 제약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,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수행 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
- 전담기관은 사업수행기관에 기술 요구사항, 개발현황 등의 기술·규격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
- 사업 내용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
 - 개인정보보호컨설팅 등을 시행
 - 전담기관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, 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자료요청 및 실사 가능
 - 전담기관은 검증 후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하여야 함
 - ※ 전담기관이 '적정성 검증 TF'(단독 또는 외부전문가)를 구성하여 사업장 방문 요구시,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지원해야 함
- 사업 관련 언론보도·홍보는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
 - ※ 위 사항 위반 시 사업취소, 환수 등 주요 위반사항으로 간주
- 구매·용역(수의계약 포함)은 공고, 누리장터 입찰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